기업체지적재산등록의 합리적조직

강 춘 식

1. 서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잘하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게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지식경제시대는 과학기술의 종합적발전과 지식의 대대적축적, 그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하여 사회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지식자원이 주되는 생산자원으로 되고있는 오늘 경제의 지속적발전은 지식자원을 적극 창조하고 최대로 확보, 리용하는데 달려있다.

기업체들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업경영관리를 개선하고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풀어나가는데서 기업체지적재산관리를 위한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적재산관리를 위한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세워나갈 때 기업체들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 기술개발능력, 새 제품개발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해나갈수 있다.

론문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연구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적제품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리, 류통하는 체계를 세워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지적재산등록의 합리적조직을 위한 방도들을 밝히는것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2. 본론

2.1. 기업체지적재산과 그 특징

지식경제시대에는 지식이 주되는 생산자원으로 되고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며 지식의 힘에 의하여 사회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

지식자원은 자연개조의 창조적능력을 규정하며 생산실천에 리용될수 있는 일정한 량과 질을 갖추고있는 지식의 총체를 말한다. 생산경영활동실천에 리용되여 일정한 경제적효과를 얻거나 새로운 지식창조에 리용되여 생산물의 과학용량을 이루는 지식의 총체를 지식자원이라고 할수 있다.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지식자원은 아직은 생산을 위한 잠재력에 지나지 않는다. 지식자원은 리용되여야그의 경제적의의가 있다.

지식이 중요한 생산자원으로 되고 생산공정이 더욱더 첨단기술에 기초한 기술공정으로 전환되며 생산물용량구성에서 지식, 과학용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식경제시대에는

생산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적제품을 기업체재산구성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적제품이란 경제적측면에서 볼 때 정신로동에 의하여 이룩된 과학연구성과, 발명, 창의고안, 설계도면, 공업도안, 상표, 기술비결가운데서 사회적생산실천에 도입되여 높은 기술경제적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지적창조물을 말한다.

기업체들에서 자기 단위에서 연구개발한 지적제품의 리용은 그것을 지적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리, 류통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지적재산은 일정한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인간의 지적창조물로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산이다. 이로부터 기업체지적재산은 일정한 경제적가치를 가지고있으며 기업체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과학기술지적제품과 같은 무형재산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기업체자체로 연구개발하였거나 양도받아 그에 대한 리용권을 행사하는 특허기술과 같이 지적소유권으로 보호되며 일정한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지적제품들이 기업체지적재 산의 기본대상을 이룬다. 기업체지적재산에는 공업도안, 실용신형, 기술비결 등과 같이 직접 생산경영활동에 리용되여 일정한 경제적효과를 가져오는것들과 상표권과 같이 생산 경영활동에 직접 리용되지는 않지만 기업체의 권리가 보호되는 무형재산들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기술비결자체는 발명, 특허와 같이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법적보호를 받는것이 아니라 비공개를 전제로 해당 기술적내용이 당사자들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보호되게 된다. 따라서 기술비결은 직접적으로는 지적소유권보호대상이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기술계약 및 이전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그의 리용 및 이전과정에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규제되고 비밀로 되고있는 기술적내용이 보호된다는 의미에서 지적재산의 대상으로 본다.

여러 나라에서 지적재산을 보호조건과 표현형태 등에 따라 특허, 상표, 저작권, 공업 도안과 같은 공식적형태와 기술비결과 같은 비공식적형태로 구분하고있는것은 이와 관련 된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기술특허는 물론 경영기법 등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부여하고 그 것을 지적재산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경영기법자체는 생산경영활동을 위한 기술적자원으로 되는것이 아니며 더우기 한 단위에서 창조된 우월한 경영방법이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적범위에서 적극 일반화되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그것을 기업체지적재산구성에 포함시킬 근거는 없다.

오늘 세계적으로 기업체가 보유하고있는 공업소유권과 상표 등의 가치를 통하여 그의 기술개발능력과 경쟁력을 평가하고있으며 기업관리에서 지적재산관리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기업체지적재산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는데서 그것이 다른 형태의 기업체재산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옳게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기업체지적재산의 특징은 첫째로, 그것이 과학기술로동, 지적활동의 산물이라는것이다. 지적재산의 대상으로 되는 과학기술성과, 지적제품들은 인간의 높은 창조적능력에 기 초한 과학기술로동, 지적활동의 산물이다.

지식경제시대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를 창조하기 위한 지적활동은 과학기술집단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개발활동사이의 밀접한 결합,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분석, 연구 개발과정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포함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창조적활동이다. 물론 지식경제시대에 기계설비들이 CNC화, 지능화되고 고순도 및 복합재료를 비롯한 과학기술적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원료, 자재들이 생산에 리용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체재산들은 일단 연구개발된 다음 그의 생산과 리용은 이미 연구개발과정에 밝혀진 과학기술적원리와 방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반복적인것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에 비하여 과학기술적, 창조적수준이 높지 못하다.

기업체지적재산의 특징은 둘째로, 그것이 무형재산이라는것이다.

지적재산의 대상인 지적제품은 무형제품이며 지적재산은 일정한 물질적실체가 없는 무형재산으로서 유형재산(기계설비, 원료, 자재 등)과 존재형태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적제품에는 과학연구의 직접적인 산물이 제품화된것과 지식산업의 창조물이 속하며 따라서 지적제품을 존재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제품, 그 의의에 따라 정보제품과 비정보제품으로 구분하고있다. 정보형태의 지적제품은 무형제품이며 비정보형 태의 지적제품은 유형제품이라는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지적제품이 생산을 위한 지출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며 지적제품을 구분하는데서 그것이 어떤 부문에서 생산된 제품인가 하 는것이 아니라 생산물용량구성에서 과학용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이 기준으로 된다고 보는데서 출발한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 그것은 지적제품을 창조하는데도 지식자원과 함께 로력자원과 물질자원이 리용되기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연구개발활동의 결과 창조된 지적제품(무형제품)은 그의 재생산, 가치평가와 가격제정, 류통과 관리 등에서 일반물질제품은 물론 비정보형태의 지적제품(례를 들어 정보설비) 등 유형제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실례로 콤퓨터와 같은 정보설비는 인간의 지적능력, 조종기능의 일부를 대신하는 로동수단으로서 그것을 가지고로 등을 진행할 때 로동대상은 물질자원인것이 아니라 정보 그자체이다. 그렇지만 정보설비는 기계설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물질적지출을 통하여 생산되고 그의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따라 시간과 비용, 물질적지출이 늘어나며 물질적형태를 가지고있으며 리용과정에물리적으로 마멸되게 된다. 정보설비는 그의 생산과 리용, 류통에서 일반기계설비들과 공통점을 가지고있으며 구조와 성능, 기술수준과 인간의 조종기능의 일부를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가질뿐이다.

지적제품의 류통과 관련한 규정과 시행세칙, 여러 도서에서 무형의 지적제품에 대하여서만 규제하고 해설한것은 유형의 지적제품이 존재와 리용측면에서 기타 기업체재산과 공통점을 가지고있으며 이미 기업체고정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리가 이루어지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1970년이후 프로그람이 콤퓨터장치와 분리되여 독자적인 제품으로 보고 류통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제품시장과 쏘프트웨어제품시장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것은 콤퓨터의 가격구성과 성능에서 무형의 프로그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된것과 함께 그의 재생산과 리용, 가치평가와 보호 등에서 일반물질제품의 경우에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특징을 띠는것과도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이로부터 본론문에서는 기업체지적재산의 대상을 무형의 지적제품으로 보고 그의 재 산관리에 대하여 분석한다. 다른 기업체재산들은 일정한 물질적형태로 존재하며 그의 재료와 구조, 성능 등이 그의 쓸모를 이룬다. 그러나 지적재산은 인간의 지적창조물로서 도면, 설계도안, 프로그람, 기술보고서 등의 과학기술적내용이 특수한 물질적매체형태로 존재하며 그의 쓸모는 매체자체의 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있는 지식, 기술적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지적재산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체의 현물재산에 해당한 법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측할수 없는 현상들이 초래될수 있는것은 물론 지적재산관리제도와 질서의 확립도 어렵게 될수 있다.

기업체지적재산의 특징은 셋째로, 그것이 동시에 리용할수 있고 끊임없이 갱신되며 기술경제적효과가 변동되고 시효가 짧은 재산이라는것이다.

지적재산은 우선 여러 기업체가 동시에 리용할수 있는 재산이다.

기계설비와 같은 기업체의 현물재산들은 일단 한 기업체가 리용하면 제3자가 동시에 같은 재산을 리용할수 없다. 그러나 지적재산은 계약에 의한 리용허가 등의 지적제품류통 공간을 통하여 여러 기업체가 동시에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다. 지적재산은 해당 기술적내용이 공개되고 공동으로 리용되여도 지적소유권과 기술계약법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기업체의 재산적권리가 보장되게 된다.

지적재산은 또한 리용과정에 끊임없이 갱신되고 기술경제적효과가 변동되는 재산이다. 지적재산은 현물재산과 달리 그의 리용과정에 물리적마멸이 없다.

지적재산은 기술발전과 갱신에 따라 도덕적으로 마멸되여 로화 또는 도태되거나 그의 기술적내용이 갱신되는 경우 오히려 기술경제적효과가 증대되게 된다.

지적재산은 또한 리용에서 시효가 짧은 특성을 가지고있는 재산이다.

지적소유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은 기업체의 일반재산과 달리 그 리용에서 유효기간이 있다.

일반재산에 대한 소유 및 리용권은 현실적으로 기업체가 점유, 리용하고있는 한 존재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들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유효성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 등은 상대적인것으로서 부단히 갱신된다. 갱신주기가 단축될수록 어느 한 기업체에 지적소유권에 기초한 재산의 독점적권한을 계속 부여하는것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모순되게 된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관리와 리용에서는 일정한 기간이지나면 그의 재산적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있다. 이것은 지적재산의 내용년한을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로 된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의 갱신주기가 끊임없이 갱신되는 조건에서 그의 수명은 더욱 짧아지게 된다.

기업체지적재산의 특징은 넷째로,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재부라는것이다.

기업체지적재산은 그의 소유와 리용에서 기업체에 일정한 법적, 경제적권한이 부여되는 재산으로서 다른 지적재부들과 구별된다.

이미 리용되고있는 지적재부라고 하여 반드시 소유와 리용에서 그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규정되여있는것은 아니다. 실례로 지식자원의 경우 기업체의 생산경영활동에 직접 리용된다 하여도 그에 대한 소유나 리용에서 기업체에 독자적인 법적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적제품이 지적소유권으로 보호받고 기업체재산으로 등록, 관리되는 경우 그의 리용 과 류통에서 기업체에 일정한 권한이 부여된다. 지적제품에 대한 법적인정과 보호는 그것 이 지적소유권은 물론 기업체재산으로 등록하고 류통, 도입리용하는 전반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지적재산의 이러한 특징들은 지적재산관리를 위한 정연한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는데 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들이다.

지적재산의 특징에 맞게 지적제품의 가치평가, 재산등록과 삭제, 류통 등과 관련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해명함으로써 지적재산관리를 위한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확립 하여야 한다.

2.2. 기업체지적재산의 등록조직

2.2.1. 기업체지적재산등록조직에서 나서는 요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적재산관리를 합리적으로 실현해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창조되는 지식자원, 지적제품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재산으로 등록하는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는것이다.

기업체들에서 지적제품을 재산으로 등록한다는것은 자체로 창조하였거나 양도받아 기업경영활동에 도입, 리용하는 과학연구성과, 지적제품들을 빠짐없이 장악하며 그 실태 를 일상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업체재산의 해당 항목에 가치적으로 기록한다는것이다.

지적제품의 기업체재산으로의 등록조직은 창조된 과학연구성과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가격과 지적소유권공간 등을 통하여 그 리용과정을 자극, 통제하기 위한 지적재산관리의 중요한 첫 공정이다.

기업체들에서 지적제품자체의 등록과 그의 지적재산으로의 등록은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다.

우선 등록대상에서 볼 때 기업체지적재산등록과 관리의 대상은 해당 기업체가 창조 하였거나 양도받아 생산경영활동에 리용되는 지적제품 그자체이다. 따라서 기업체지적재 산의 등록은 지적제품의 등록을 전제로 한다.

또한 지적제품과 그의 재산으로의 등록은 다같이 지적소유권을 리용하여 재산적권리를 보호하며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창조하고 도입, 리용하도록 자극하고 추동하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그러나 지적제품의 기업체재산으로의 등록은 자기의 고유한 내용을 가지고있다.

등록내용을 놓고볼 때 지적제품의 등록은 지적제품의 과학기술성과(지적제품창조자가 과학기술성과의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한 지적제품명)에 대한 현물적등록이며 기업체지적재산등록은 지적제품의 가치(가격)에 대한 화폐적등록이다. 지적제품을 기업체지적재산으로 등록하는것은 그의 개발창조와 류통, 도입리용과정에서 재산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지적제품의 등록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따라 해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게 되지만 그의 재산적권리가 실제로 행사되기 위하여서는 해당 지적제품에 대한 기업체재산으로의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기관, 기업소들의 지적제품의 등록에는 현물등록과 화폐적등록의 두가 지 형태가 있으며 현물등록은 고정재산관리부서가 진행하며 그의 도입과 리용에 관한 화 폐적등록은 재정회계부서에서 진행하는것이 합리적이며 그 리유는 기관, 기업체들에서 지적제품을 넘겨주고 받을 때에 상품적형태를 통하여 주고 받게 되며 그의 창조와 도입, 리용과정에는 자금지출이 동반되기때문이라고 한것은 이와 관련된다.

지적재산등록사업은 지적재산관리의 중요한 첫 공정으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는데 따라 지적재산관리의 성과여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기업체들에서 지적재산의 등록조직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첫째로, 기업체들에서 지적재산등록사업을 국가의 통일적, 계획적지도밑에 진행하도록 하는것이다.

지적재산등록사업을 국가의 통일적, 계획적지도밑에 진행한다는것은 결코 국가가 이 사업전반과정을 다 틀어쥐고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체들에서 지적재산등록사업을 국가의 통일적, 계획적지도밑에 진행한다는것은 우선 지적재산등록을 국가과학기술지도기관과 재정기관이 제정한 지적재산등록원칙과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기초하여 진행한다는것이다. 또한 기업체들에서 지적제품을 재산으로 등록하거나 류통시키는 경우 기업체의 재정 및 지적제품관리부서는 물론 해당 가격기관과 재정은행기관에 빠짐없이 제때에 등록, 통지하도록 하며 국가는 그 과정을 철저히 장악하고 통제하도록 한다는것이다.

국가는 기업체들에서 창조되는 지적재산과 그 리용실태를 통일적으로,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그의 관리와 효과적리용을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며 그 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종해나가야 한다. 특히 지적재산의 류통과 리용과정에 국가와 기업체들사이의 재정처리와리익분배 등이 국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옳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기업체들에서 해당 과학기술심의 및 등록기관의 심의평가를 받고 등록된 지적제품만을 기업체재산으로 등록하고 류통시키는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것이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로서 기술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담보와 도입가능성이 있으며 인민경제부문별, 지역별에 따라 해당 과학기술심의 및 등록기관의 심의평가를 받고 등록된 지적제품에 한하여기업체지적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리, 류통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새로 창조된 과학기술성과들을 국가적으로 빠짐없이 제때에 장악하고 국가경제 발전전략과 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적수준이 높고 인민경제적의의가 있는 지적 제품을 개발창조하도록 추동하고 그것을 류통시키며 도입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 으로, 계획적으로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지적제품연구개발에서 반복연구개발과 중복투자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적로동을 절약하며 지적재산류통에서 자연발생성과 지적재산권침해현상들을 없애야 한다. 설사 지적재산류통과 리용과정에 지적소유권침해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지적제품류통기관과 가격기관에 등록되여있는 지적제품에 한하여 지적소유권과 가격공간 등을 리용하여 재산적권리보호와 손해보상과 같은 통제를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로, 기업체지적재산등록사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기업체지적재산의 등록대상으로 되는 지적제품은 반드시 각 부문, 지역별심의기관들에서 그의 과학기술적내용과 수준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친것이여야 한다. 지적제품의 기업체지적재산으로의 등록이 그의 기술적내용과 수준에 대한 심의와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만큼 심의사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지적재산의 등록과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해나가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중앙으로부터 각 부문, 지역별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들의 심의성원들을 해당 부문의 권위있는 과학기술일군들과 과학자, 연구사, 교원들로 꾸리고 과학기술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심의를 거친 지적제품들에 한하여 지적재산으로 등록하고 류통, 관리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지적재산의 가격을 등록하는 사업도 엄격한 경제계산과 평가에 기초하여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체의 재정관리부서와 지적제품관리부서 그리고 해당 지역가격기관에 등록된 지적제품의 가격은 그에 대한 재산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지적제품류통기관들과 가격기관들은 해당 기관에 등록한 가격이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기술수준, 경제적효과, 지적제품창조에 들인 원가, 투자보상기간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옳게 정해졌는가, 해당 가격수준에 기초하여 지적제품류통이 진행되는가 하는것 등을 정확히 장악,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제품을 소유한 기업체들이 국가가격기관의가격제정원칙과 방법에 준하여 지적제품의 가격을 옳게 정하고 해당 재산항목에 등록하였는가 하는것을 료해장악하여야 한다.

2.2.2. 기업체지적재산등록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기업체지적재산등록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기업체지적재산등록항목을 바로 설정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재산을 순환의 어느 과정에 놓여있는가에 따라 생산재산과 류통재 산으로 구분하고 생산재산을 가치이전방식에 따라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으로 구분하고있 다. 여기에서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재산의 가치 또는 가치형태 의 이전방식이다.

외국투자기업회계에서 기업체재산은 가치이전방식에 따라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으로 구분한 다음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또다시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분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재산을 가치이전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의 현금에로의 전환기간을 보조적인 기준으로 하여 1년이전에 현금으로 전환할수 있는 재산은 류동재산으로, 그 이후에 현금으로 전환할수 있는 재산은 고정재산으로 구분하고있다.

외국투자기업회계규정에 의하면 1년이상의 장기간의 생산과정에 점차 마멸되면서 자기의 가치를 이전시키며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이 고정재산이라는것이다. 그리고 고정재산을 다시 유형 및 무형의 고정재산, 투자고정재산으로 구분하면서 무형고정재산에 특허권, 연구개발비, 상표권, 저작권, 자원개발권과 같은것이 속한다고 보고있다.

기업체재산구분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하여 지적제품을 기업체재산으로 등록하는데서 여러가지 견해가 제기되고있다.

그것은 우선 지적제품을 무형의 고정재산으로 등록할수 있다는것이다.

그 리유는 지적제품이 무형제품이기는 하지만 가치이전방식의 견지에서 고정재산과 같은 경제적내용을 가지기때문이라는것이다. 즉 지적제품은 일정한 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제품생산에 참가하면서 자기 가치를 이전시킬뿐아니라 판매가격의 일부로서 일정한 기간 보상된다는 측면에서 일반고정재산과 같이 볼수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고정재산구분에서 기본은 유형, 무형과 같은 그의 존재형태가 아니라 가치이전방식이라고 보는 견해에서 출 발한것이다.

그것은 또한 지적제품, 지적재산을 고정재산으로 볼수 없다는것이다.

그 리유는 지적재산이 가치이전과 가치계산에서 다른 고정재산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즉 지적재산은 다른 고정재산들과 같이 제품생산에만 참가하여 가치를 이전시키는것이 아니라 여러 제품생산은 물론 새 제품개발과 경영활동개선 등에도 이바지하는 과정에 가치를 이전시키며 지적재산이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그의 가치도 생산에 투입된 시간이나 원가에 기초한 계산만으로는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리고 지적재산이 일반고정재산과 달리 물리적마멸이 없고 기술경쟁과 기술수명주기의 불규칙성과 끊임없는 단축, 지적제품개발리용에서의 모험적성격으로 하여 재산가치의 변화폭이 매우 크기때문이라는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산은 가치평가와 감가상각계산이 어려우며 고정재산으로 볼수 없다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지적재산항목을 독자적으로 내오고 그에 따라 등록관리할수 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회계업무상 재산등록에서 현재의 고정재산과 류동재산항목외에 지적재산항목 을 새로 추가하고 지적재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의 등록, 관리와 관련한 내부규정세칙을 따로 정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에는 일련의 타당성과 함께 문제점들도 있다.

지적제품을 기업체재산으로 등록하는 사업은 모든 기업체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식자원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지적재산관리체계,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체계를 확립해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더우기 이 사업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것만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 부터 출발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우리 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기업체재산항목에 무형재산/공업소유권재산항목을 새롭게 설정하고 지적제품을 내용 적으로는 과학기술관리부서에, 가치적으로는 재정회계부서에 재산등록하도록 할수 있다.

이 경우 현존 경영회계계시표에서 지적재산과 관련한 독자적인 분류항목을 설정할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이 현물고정재산과 마찬가지로 여러차례의 생산과정에 가치를 이전 시킨다는 본질적인 공통점으로부터 고정재산분류에 포함되는 계시항목으로 설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다.(실례로 114/1(무형재산/공업소유권재산), 214/1(무형기금/공업소유권기금))

기업체지적재산등록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둘째로, 지적재산의 등록 및 삭제시점 과 단위를 옳게 정하는것이다.

우선 지적재산의 등록 및 삭제시점을 옳게 정하여야 한다.

지적재산등록에서는 기업체들에서 창조되였거나 구입한 지적제품을 재산으로서 언제 등록하며 언제 삭제하겠는가 하는 시점문제가 제기된다. 지적재산의 등록 및 삭제시점을 옳게 정하여야 지적제품을 제때에 재산으로 등록함으로써 그의 도입리용에 대한 실태장 악과 통제를 강화할수 있다.

기업체들에서는 과학기술성과가 심의를 거쳐 그의 기술경제적가치가 인정되면 제때

에 지적제품등록과 함께 재산등록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적재산에 대한 삭제는 그의 도덕적로화를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을 바로 규정하여 야 한다.

지적재산이 내용년한이 되였거나 기술갱신에 따라 도덕적으로 로화되였다는것이 해당 심의기관에 의하여 평가되면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의 등록 및 삭제단위를 옳게 정하여야 한다.

일정한 지적제품을 기업체재산으로 등록관리하던 단위가 해산 또는 통합되여 관리소속 및 경영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적제품증서의 변경내용에 따라 재산삭제와 그에 대한 소유 및 관리권을 넘겨받게 되여있는 기관, 기업체에로의 등록을 제때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적제품류통(기술이전)의 류형별로 그의 등록과 삭제단위를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적제품류통에서 가장 많이 리용되고있는 류형들로서는 양도와 리용허 가 등이 있다. 지적제품양도와 리용허가는 기업체의 권한에 속하며 그의 재산상등록과 삭 제에서는 서로 다른 문제들이 제기된다.

지적제품양도는 말그대로 소유권의 이행으로서 해당한 법적문건을 지적제품류통기관에 등록하고 양도한 기업체는 삭제하며 양도받은 기업체는 새로 등록하게 된다. 지적제품 리용허가의 경우에는 소유권변동은 없으므로 등록과 삭제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계약에 따르는 리용허가권적용과 계약기간내에 그의 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분배등 호상 지켜야 할 의무리행을 법적으로 통제하는것이 중요하다.

기업체지적재산등록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셋째로, 지적재산의 등록절차와 질서 를 정확히 지키는것이다.

지적재산등록절차와 질서를 정확히 지키는것은 지적재산등록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며 지적재산의 크기와 리용실태를 시기별, 지적재산형태별로 장악하고 그의 류통과 도입, 리용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적재산등록절차와 질서를 정확히 지키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우선 재산으로 등록하게 되여있는 해당 지적제품이 과학기술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적내용과 수준이 인정되고 지적소유권 등으로 법적보호를 받은것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확인한데 기초하여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적제품의 가치평가를 과학적으로 한데 기초하여 기업체지적재산관리부서(지적제품관리부서와 재정회계부서)와 해당 가격기관에 가격을 등록하는 질서를 엄격히세워야 한다. 지적제품에 대한 가치평가와 가격심의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업체들에서 이사업을 주관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업체의 당면한 리익만을 추구하여 과학성,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실태를 정확히 반영할수 있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재산등록에서는 지적재산의 기술적내용과 리용범위 등 내용적등록과 가치적등록을 지적재산형태별로 해당 지적재산관리부서들에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당 절차와 방법을 명백히 규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적재산등록날자를 정확히 반영하며 정해진 날자안으로 제때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지적제품의 기업체재산등록사업에서는 해당 지적제품, 지적재산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확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는데서 여러가지 지적자 원에 대한 소유권문제를 옳게 해결하여 지적재산을 경제강국건설의 밑천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은 현실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기업체지적재산의 등록대상은 지적소유권으로 보호받는 지적제품이며 따라서 지적재산등록은 발명 및 특허형태의 지적제품에 대한 권리행사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우리 나라에는 발명과 특허등록체계가 서있으며 발명권과 특허권을 각각 누구를 소유자, 권리행사자로 하여 기업체지적재산으로 등록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 모든 근로자들과 기업체들이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게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지적재산등록과 류통, 관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기술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자와 그가 속한 기업체사이에 계약을 맺고 해당 기술, 지적제품을 기업체재산으로 등록하고 리용권을 기업체가 행사하도록 할수 있다. 발명기술의 경우에도 국가과제로서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비롯한 국가자금공급을 받아 이루어진 인민경제적의의가 있는 기술성과, 지적제품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리용권을 그대로 가지고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성격에 맞게 인민경제적범위에서의 확대도입, 일반화를 적극 추동하도록 하면서 기업체들에서 자체자금으로 위탁 또는 공동으로개발한 발명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체에 리용권을 주고 재산적권리를 행사하도록 할수 있다.

발명 및 특허기술의 경우에도 한 단위에서 이룩된 과학연구성과가 다른 단위들과 공유되고 기술이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도입리용되도록 하자면 행정적조치들과 함께 지적소유권을 통한 기술성과보호와 기술계약 등의 경제적, 법률적조치들을 따라세우는것이 필요하다.

지적제품류통과 지적소유권관련법과 규정, 시행세칙들에 그와 관련하여 제기될수 있는 문제 특히 기술계약과 지적재산류통 및 리용에 대한 재정처리, 손해보상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보다 명백하게 세부적으로 밝혀주는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기업체들과 근로자들이 새 기술과 제품개발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지적자원의 소유권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지적재산을 경제강국건설의 밑천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직무발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 기업체와 발명자사이에 계약을 맺고 해당 기술개발과 관련한 지적로동에 대하여 보상해주고 그 기술, 지적제품의 거래는 기관, 기업체들이 맡아하고있다. 즉 기관, 기업체와 그에 소속된 발명자사이에는 계약상의 양도관계가 맺어지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다. 그것은 발명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며 그 기술의 상업화, 산업화실현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때문에 해당 지적제품의 거래와 재산적권리행사는 기관, 기업체가 맡고 계약에 따르는 보상을 받는것이 발명자들의 리익에 저촉되지 않는것과 관련된다. 특허등록문건들에 해당 기술의 개발자를 의미하는 발명자와 발명자와 련계되여있는 기관, 기업체 혹은 법인을 의미하는 신청자항목이 있는것은 이와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기관, 기업체와 발명자사이에 권리의 양도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켜놓는다면 기술개발 자가 다른 기관으로 조동되였다 할지라도 기술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미 소속되여있던 기관, 기업체에서 양도하지 않는 한 그 단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물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국가의 조치에 따라 해당 발명을 발명자가 조동된 기관으로 넘길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산양도의 법적수속 및 등록과 삭제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그에 대한 보상과 재산리용과 관련한 법적담보를 하는 체계를 세우는것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다.

기업체들에서는 지적재산의 등록을 위한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여 지적재산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가야 한다.

3. 결 론

모든 기업체들이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 지식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 나가는것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기업체들에서 지적재산관리를 합리적으로 진행해나가는데서는 지적재산의 등록을 위한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것과 함께 지적재산의 가치평가, 기술계약과 재정회계계산체계를 확립하며 지적제품의 류통과정에 자금지출과 리익분배, 지적제품리용과정에 조성된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의 리용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 앞으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지적재산관리문제는 결코 리론상의 문제가 아니며 지식경제시대 경제관리실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지적재산관리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기업 관리실천에 구현해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지적재산, 지적제품